

보 도 자 료

计从 互络批 对故则于

보도 일시	2022. 8. 29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8. 26. (금)	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변제호(02-2100-2830)	
<총괄>	<총괄> 금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 송현지(02-2100-2832)	

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(세출생기군)이 시행됩니다.

- ◇ 코로나 대응,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'새출발기금'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(잠정)입니다.
 - ※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(국정과제 I-①)
- ◇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 -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.
 - (원금조정)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(부실차주, 연체 90일 이상)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~ 80%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. (부실차주의 신용·보증채무)
 -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.
 - (실질심사)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, 채무조정시 소득·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.
 -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.

- (상환유예)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(부동산담보대출은 3년)은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('거치')할 수 있고,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고금리 대축은 중·저금리로 조정합니다.
- (금리조정)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·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 (부실우려차주의 신용·담보·보증채무, 부실차주 담보채무)
- ◇ '22.10월(잠정)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
 -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**콜센터**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

1 추진배경

- 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.
 -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,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.
 - ※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('19년말~'22.6말)
 - ①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(사업자대출 653조원 + 가계대출 343조원)
 - ②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: +303.9조원(+44%)
 - ③ **비은행권 대출**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: +160.4조원(+71%)
 - ④ **다중채무자**(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)가 4배 이상 증가 : 8만명→33만명

- □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**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**의 5~8%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 - 그간의 **손실보전금, 정책자금지원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** 등 **코로나 대응조치**가 계속되면서 **부실**이 드러나지 않았으나,
 - **코로나 재확산**, **3**高(高금리·高물가·高환율) 등 **경제·금융환경이 악화** 되는 경우, **잠재부실이 누적·확대**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□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,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고금리,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 하고,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,
 - **부실차주**에 대해서는 **원금조정** 등을 통해 **기존부채**를 **상환능력**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**재기기회**를 제**공**하고자 합니다.
 - ※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.
 - * 125조원 + @의 민생안정대책(7.14. 보도자료) 참고

소상공인·자영업자	■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(41.2조원) ■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(8.5조원)		
서민금융	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(10조원)		
가계차주	■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·고정금리를 전환하고,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' 안심전환 대출 '지원(45조원)		

2 채무조정 대상 차주

- □ 새출발기금은 ^①코로나 피해 ^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^③장기 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□ ①**코로나 피해**, ②**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**, ③**취약차주**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.
 - ① (코로나피해)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
 -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
 - 다만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② (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)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(법인사업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에 한함)
 - **코로나 발생** 이후('20.4.~) **폐업**한 차주도 포함(추경 부대의견)
 - ③ (취약차주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

	판단 기준(안)
부실차주	■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가 발생한 차주
부실우려차주	■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 (폐업 및 휴업신고자) ■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차주(8.29.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■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■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* 등 *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

- ④ (지원제외)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,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
 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 하고, 채무조정 신청시 <mark>질적 심사를 실시</mark>할 계획
 - 채무조정 이후에도 **허위서류 제출, 고의적 연체** 등이 발견될 경우 **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**하고 신규 신청 금지
- □ 신청자가 **지원대상 차주**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**'새출발기금 온라인** 플랫폼(10월 중 오픈예정)'을 통해 **손쉽게 확인**할 수 있습니다.
 - 국세청·행안부·중기부 등 관계부처,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- * 다만,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(예: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)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 채무조정 대상 대출

- □ 새출발기금은 '새출발기금 협약*'에 가입한 **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** 모든 대출(사업자·가계/담보·보증·신용 무관)을 대상으로 합니다.
 - * 약 6,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
 -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**자영업자·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** 프로그램인 만큼, **자영업자·소상공인**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.
 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(13%)이 낮고, 담보(75%), 보증부대출(12%)이 많은 만큼 담보·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.
 - 자영업자는 **사업체**와 **개인**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, **효과적인 재기와 회복**을 위해 **가계대출**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.
 - *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,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

- □ 다만, **대출**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**채무조정하기 어려운**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 - ① 부동산임대·매매업 관련 대출,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전세보증대출 등
 - 다만,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, 화물차·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
 - ② 할인어음, 무역금융, SPC 대출, 예금담보대출,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,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
 -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·지방세·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
 -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
 - *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% 초과시 지원불가
 -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

4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

- □ 새출발기금은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 - 다만,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 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□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.
 -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**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**한 수준입니다.
 - 현재 자영업가구의 **평균 부채보유액이 1.2억원**(통계청)인 점을 고려시,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**충분히 대상**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5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차주의 **신용상태** 및 **대출유형**에 따라 **맞춤형 채무조정**을 지원받게 됩니다.

	보증부대출	신용대출	담보대출
부실차주	Track 1 (대위변제 후)	Track 1	Track 2
부실우려차주	Track 2	Track 2	Track 2

[Track 1] 부실차주가 보증·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

- □ 부실차주가 보증·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**대출원금** 및 **대출상환일정**을 조정합니다.
 - (원금조정)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,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(순부채)의 60~80%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.
 - 순부채(부채-재산가액)에 대해 **감면율** 60~80%를 차등적용하는 만큼,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*~80%로 상이합니다.
 - *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
 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 - ※ 동 채무감면율은 **코로나 피해**의 **불가피성**을 감안하여, 현행 **채무조정 제도** 대비 감면수준을 **다소 확대**한 것입니다.

총 부채 대비 감면율	평균 감면율		
0~70% (취약계층 ~90%)	44% (상각채권은 61%)		
0~80% (취약계층 ~90%)	-		
제한없음	60~70%		
_	0~70% (취약계층 ~90%) 0~80% (취약계층 ~90%)		

- (금리감면) 이자·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. (부채>재산의 경우)
- (분할상환) 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.
- (상환기간)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.
 -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'거치기간'은 최대 0~12개월간 지원되며, 분할상환기간은 1~10년간 지원됩니다.
 - ※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 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.
- □ (신용패널티)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,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(공공정보)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(CB:Credit Bureau)에 공유합니다.
 -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, 카드 이용·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다만, **2년 경과**시 **공공정보**가 해제됨으로써,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.

[Track 2] 부실우려차주가 담보·보증·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,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

- □ 차주가 자신의 **영업회복 속도**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**대출구조**를 **긴 만기, 낮은 금리, 분할상환대출**로 전환합니다.
 - (원금조정)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- (금리감면) 차주 **연체기간**에 따라 **차등화**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.
 - (연체 30일 이전)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됩니다.
 - *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
 - (연체 30일 이후)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,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.
- ※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,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,
 - **상환기간**이 짧을수록 **낮은 조정금리**가 제공되므로 **상환여력** 내에서 **가급적** 빠르게 대출을 **상환**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 - * 예 : (상환기간 3년 이하) 3% 후반, (3~5년) 4% 중반 (5년 이상) 4% 후반 상기 금리는 **예시**에 불과하여, **'22.9월말 상황**을 감안 **추후 결정**
- (분할상환) 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.
- (상환기간)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*은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, 분할상환기간은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은 1~20년)까지 지원됩니다.
 - *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 부과
 - 거치기간 중 **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**도 **가능**합니다.
- □ (신용패널티)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,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)

6 채무조정 신청접수

- □ (접수채널)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* [플랫폼]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(새출발기금.kr) [현장창구]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사),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(26개소)
 - 또한, 9월 중 별도 **콜센터 출범 운영**을 통해 **새출발기금 이용**에 대한 **상세한 안내** 및 **상담**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※ 온라인 플랫폼, 콜센터 출범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
- □ (시행)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, 금융권 협약체결(6,500여개), 전산시스템 구축(1~2개월 소요)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*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.
 - *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
 - '22.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,
 - 코로나 재확산 여부, 경기여건, 자영업자·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□ (채무조정) 채무조정 신청시,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.
 -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**거치기간** 및 **상환일정**에 따라 **상환** 하시게 됩니다.



- *「새출발기금」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.
 - ◈ 캠코 콜센터 1588-3570
- ◈ 신복위 콜센터 1600-5500

- ※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(별첨)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(상세)
- ※ 동 보도자료는 새출발기금의 기본적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, 차주의 상황, 조정신청 대상 대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패널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, 세부방안은 금융권·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청취 및 최종협의,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만큼, 조정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금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송현지 (02-2100-2832)
중소벤처기업부	책임자	과 장	김주식 (044-204-7520)
기업금융과	담당자	서기관	김승택 (044-204-7521)
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001)
	담당자	수석조사역	서기철 (02-3145-8300)
한국자산관리공사	책임자	실 장	민은미 (051-794-3030)
	담당자	팀 장	명재성 (02-3420-5690)
신용회복위원회	책임자	본부장	민영안 (02-750-1021)
	담당자	부 장	최윤화 (02-750-1071)
서민금융진흥원	책임자	부 장	심재철 (02-2128-8015)
	담당자	팀 장	이석희 (02-2128-8022)
신용보증기금	책임자	부 장	곽영남 (053-430-4411)
	담당자	팀 장	권오정 (053-430-4412)
기술보증기금	책임자	부 장	박문수 (051-606-7480)
	담당자	부부장	엄대호 (051-606-7481)
신용보증재단중앙회	책임자	부 장	하금두 (042-480-4285)
	담당자	차 장	권주희 (042-480-4286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책임자	실 장	윤수정 (042-363-7231)
	담당자	차 장	이재형 (042-363-7232)
	금융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	금융정책과 담당자	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담당자 수석조사역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실 장 담당자 팀 장 남당자 부 장 담당자 부 장 담당자 부 장 담당자 팀 장 김용회복위원회 책임자 부 장 담당자 팀 장 기술보증기금 책임자 부 장 담당자 팀 장 감상자 부 장 담당자 본부장 참임자 부 장 담당자 팀 장 감상자 부 장 담당자 팀 장 감상자 부 장 담당자 부부장

<공동>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책임자	실 장	박미정 (055-751-9590)
		담당자	팀 장	김영재 (055-751-9601)
<공동>	한국신용정보원	책임자	부 장	조만식 (02-3705-5917)
		담당자	팀 장	이병철 (02-3705-5911)
<공동>	은행연합회	책임자	상 무	김평섭 (02-3705-5050)
		담당자	부 장	김경민 (02-3705-5704)
<공동>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부 장	최승진 (02-397-8670)
000		담당자	차 장	이윤조 (02-397-8672)
<공동>	농협중앙회	책임자	팀 장	송광민 (02-2080-3121)
00'		담당자	계 장	우한울 (02-2080-3126)
<공동>	수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박현호 (02-2240-2200)
0		담당자	팀 장	최영동 (02-2240-2210)
<공동>	신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민경대 (042-720-1341)
00		담당자	팀 장	홍석진 (042-720-1355)
<공동>	산림조합중앙회	책임자	부 장	조현철 (02-3434-7230)
,00		담당자	팀 장	정미경 (02-3434-7235)
<공동>	새마을금고중앙회	책임자	부 장	장석남 (02-2145-9650)
		담당자	차 장	김한국 (02-2145-9654)
	여신금융협회(카드)	책임자	본부장	배종균 (02-2011-0602)
<공동>		담당자	부 장	조윤서 (02-2011-0740)
10.67	여신금융협회(금융)	책임자	본부장	이태운 (02-2011-0710)
		담당자	부 장	백승범 (02-2011-0619)
<공동>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부 장	유제상 (02-2262-6624)
,00		담당자	팀 장	전선규 (02-2262-6530)
<공동>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부 장	최종수(02-3702-8571)
		담당자	팀 장	이은직 (02-3702-8572)
<공동>	한국대부금융협회	책임자	부 장	심용식 (02-6710-0810)
		담당자	과 장	최정열 (02-6710-0816)
<공동>	서울보증보험	책임자	부 장	박종선 (02-3671-7231)
		담당자	차 장	이세은 (02-3671-7245)



